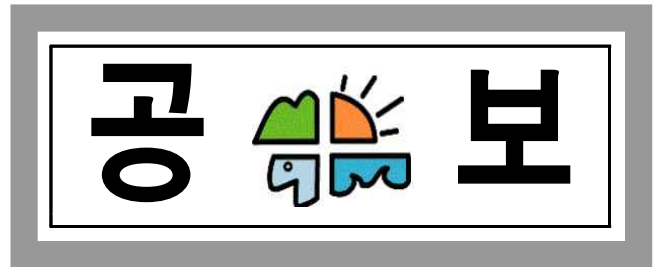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96호 2023년 10월 31일(화)

입법예고

-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속초시의 발전된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신규 상징물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속초시 상징물 관리위원회 심사 삭제
(안 제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hesera@korea.kr

2)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시민소통담당관(중앙동)

3) 팩스 : 033-639-2799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시민소통담당관 시정디자인팀(전화 : 033-639-1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속초시 상징물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사용승인 등) ①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속초시 상징물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승인 등) ①----- ----- ----- ----- ---- <u>별지 제2호서식</u> ----- ----- ----- -----.
②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③제2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경우 해당 관리부서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속초시의 발전된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신규 상징물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심볼마크, 시기, 문장·철인·휘장, 로고타입, 캐릭터 등 변경 및 전용서체 신설(안 제3조)
- 나. 상징물 사용료 면제대상 추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hesera@korea.kr

2)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시민소통담당관(중앙동)

3) 팩스 : 033-639-2799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시민소통담당관 시정디자인팀(전화 : 033-639-1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용서체: [별표 8]

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심볼 마크



“미래로 연결되는 도시 속초”

국문 '속초'를 모티브로 속초의 이미지를 미래로 이어지는 길로 표현
간결한 워드마크를 곡선적으로 디자인하여
공간적으로는 바다로 이어지고 내륙으로도 연결되며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속초의 발전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상징화
녹색과 남색 톤으로 표현하여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짐을 표현



SEORAK GREEN
C_85 / Y_100
P_2422C

EAST BLUE
C_100 / M_85
P_661C

[별표2]

시 기



정기



약기

시기는 속초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시각 상징물로서 주목성이 높아 제작시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시기는 정기와 약기 2종으로 구분된다. 공식적인 의전 행사시에 주로 사용하는 정기는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급재질에 자수처리하되 정밀하게 제작해야 한다. 계양용으로 사용하는 약기는 햇빛에 퇴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날염제작에 신중을 기하며, 퇴색을 대비해 여유있게 제작하여 보관한다.

※ 단위 : mm , 규격 : 가로 800, 세로 500

[별표3]

문 장 · 철 인 · 휘 장



문장



철인



휘장

[별표4]

로 고 타 입

국문

속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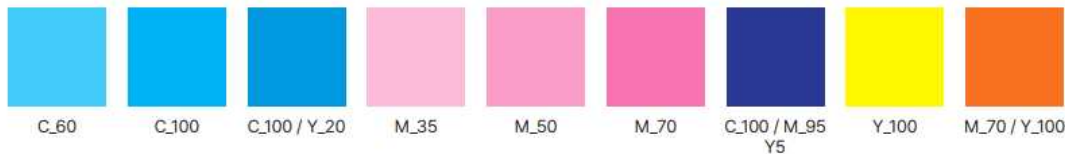
영문

SOKCHO CITY

한문

束草市

캐릭터



“짜니와 래요”

설악산의 정기와 동해의 기상을 머금고 자라난 짜니와 래요는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상상의 동물을 표현한다. 둥글둥글한 몸매는 모나지 않고 어디든 달려나가는 활기찬 속초시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파란색의 짜니는 깊은 동해바다에 풍덩 빠진 무늬와 색이 담겨 있으며, 분홍색의 래요는 설악산의 일출을 바라보다 그을린 얼굴빛이 담겨있다. 짜니와 래요는 속초시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독특한 어감으로 명명되었다.

시 목, 시 화, 시 조

시목(市木) - 은행나무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넓게 퍼지는 가지는 지역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시화(市花) - 국화



국화는 번식력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 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희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시조(市鳥) -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단결을 의미한다.

[별표7]

시가(시민의 노래)

이성선 작사
우동혁 작곡

J = 92~96

mf

1. 설 - 악 산 큰 뜻 받 마이 가 숨 에 새 - 기 고
2. 해 - 안 선 천 뜻 이 굶 마이 가 마 해 떠 오 르 고
3. 신 - 흥 사 중 소 리 에 새 새 해 깨 - 이 어

3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 리 에 켈 - 치 네
전 해 불 등 풀 - 자 기 에 구 를 뽕 - 을 물 문 네
미 슬 젖 은 말 - 길 로 바 닷 가 거 를 어 라

mp

정 성 과 보 - 람 으 로 다 저 온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높 - 대 - 어 마 등 령 바 라 보 니
갈 매 기 높 - 이 - 어 우 리 꿈 손 짓 하 니

mf

우 뚝 솟 마 빛 - 나 네 하 늘 마 래 제 일 미 라
장 - 하 구 에 무 리 닳 넌 이 그 들 욱 하 지 네
항 - 구 에 목 인 배 가 대 양 으 로 차 비 하 네

f

가 자 배 를 젖 - 자 산 으 로 바 다 향 - 해

f

우 리 열 깃 - 든 곳 여 기 가 내 고 - 향

[별표8]

전용서체

1. 서체

가. 속초바다 돌움	속초바다 돌움	SOKCHO
나. 속초바다 바탕	속초바다 바탕	SOKCHO
다. 속초바다 손글씨	속초바다-손글씨	SOKCHO

2. 의미 특징

가. 속초바다 돌움

속초의 자연과 미래 발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제목용 서체로 주목성 높은 두께로 설계. ‘ㅅ, ㅈ’꼴의 내리점을 역동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활기찬 분위기를 가짐.

나. 속초바다 바탕

속초의 자연과 힐링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완만한 형태의 부리와 맺음, 유기적인 획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가진 서체. 돌움과 동일한 구조와 특징을 반영하여 일관된 디자인 콘셉트 유지.

다. 속초바다 손글씨

속초시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표현하였으며, 직선적인 획에서 드러나는 방향성과 안정감 있는 손글씨 서체. 필력감을 담은 기울기, 꺾임과 맺음 표현으로 또렷한 인상을 가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u><신설></u>	제3조(상징물 종류)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전용서체 : [별표 8]</u>
제9조(사용료) ①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제9조(사용료)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